

【특집】

연구윤리 지침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강 준 호**

【주제분류】 윤리학, 현대철학

【주요어】 연구윤리, 원칙주의, 공공선, 객관성, 뷰참, 공리주의, 결의론

【요약문】 연구윤리가 실천윤리의 한 독립적 분야로서 성장하기 위해선 연구윤리 정책 및 규정의 바탕에 놓여있는 윤리원칙들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의 시도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논문은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 뷰참과 칠드레스가 주창한 ‘원칙주의’가 연구윤리 일반에 대한 철학적 접근방식으로서도 적합한지를 검토해보려는 시도이다. 그들이 제안한 4원칙(자율성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은 본시 생명의학의 실천과 연구를 겨냥한 것으로 의료인이나 연구자의 환자나 피실험자에 대한 타율적 의무에 초점을 둔 까닭에, 기업과 정부를 비롯한 연구 의뢰인과 사회 및 일반대중에 대한 연구자의 자율적 의무를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나는 과학연구 일반에 대한 보편적 윤리원칙으로서 ‘객관성’과 ‘공공선’의 원칙을 제안하며, 몇몇 대표적 연구윤리 문제들을 통해 이 원칙들이 연구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왔으며 그것들 중 몇몇은 실제로 난감한 문제들이지만, 연구윤리에 대한 철학적 접근방식으로서 원칙주의는 예컨대 결의론이나 덕윤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접근방식임을 간략하게 보여주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0017).

** 경희대학교 철학과 강사

I. 서론

‘연구윤리’(research ethics)는 국내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용어이며, 국제적으로도 일련의 비인도적 과학실험들에 대한 폭로사건을 통해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실천윤리의 한 분야를 가리킨다.¹⁾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아직도 실천윤리의 한 독립적 분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있다. 생명윤리·환경윤리·정보윤리를 비롯하여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실천윤리의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윤리는 20세기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확대, 그리고 인권(人權)에 대한 근본적 의식변화를 촉구한 — 대부분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성장했다. 그런데 유독 연구윤리가 최근까지도 실천윤리의 독립적 분야로서 확립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보다 그것이 관여하는 문제영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연구윤리는 —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을 모두 포괄하는 — 인간이 수행하는 일체의 지적 탐구활동과 결부되어 있어서, 그것이 배타적으로 관여하는 **고유한** 문제영역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연구윤리’라는 제목을 가진 저술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은 다른 실천윤리들이 주목하는 문제들과 중첩되거나 불가분한

1) 흔히 연구윤리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 1949) 및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1964)을 언급하지만, 이것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학구적 접근의 출발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연구윤리에 대한 증폭된 관심을 반영하여 미국회가 “생명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 피실험자들의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를 구성한 1974년, 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해 인간 실험대상에 대한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들을 규정한 『벨몬트 보고서』(Belmont Report)가 발표된 1979년이 연구윤리의 발전에서 더욱 중요한 계기들이었다.

관계를 갖는다. 예컨대 수정란을 이용한 실험은 생명체로서의 수정란의 지위에 관한 생명윤리의 문제를 낳는 동시에, 수정란 채취의 합법적 절차에 관한 연구윤리의 문제를 낳는다. 이와 유사하게 지하 혹은 수중 핵실험과 같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실험들은 당연히 환경윤리와 불가분한 관계를 갖는다.

게다가 좁은 의미에서 연구윤리를 인간과 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과학실험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에만 국한한다면,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연구윤리 담론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어온 강령이나 지침은 — 예컨대 『뉴른베르크 강령』과 『벨몬트 보고서』, 세계의사협회(WMA)의 『헬싱키 선언』,²⁾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의학연구평의회(CIOMS)에서 간행하는 『인간 피실험자를 포함하는 생명의학 연구를 위한 국제적 윤리지침』³⁾ 등은 — 모두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생명의학 연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들로서, 마치 좁은 의미의 연구윤리는 넓은 의미의 생명윤리의 하위영역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⁴⁾ 연구윤리의 핵심 문제영역은 생명윤리와 크게 중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분명 최근의 추세는 연구윤리를 인문과학

2) 『헬싱키 선언』은 1964년 채택된 이후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최근 2004년 도쿄에서 개정되었다. 선언문 내용은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wma.net/e/policy/b3.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 (CIOMS),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2002. 이 책자의 내용은 CIOMS의 인터넷 웹사이트 “http://cioms.ch/frame_guidelines_nov_2002.ht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Søren Holm and Bryn Williams-Jones, “Global bioethics - myth or reality,” *BMC Medical Ethics*, 2006, 7:10. 이 논문에서 “연구윤리”는 인간과 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연구활동에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에 국한되며, 임상윤리(clinical ethics)나 공중보건윤리(public health ethics) 등과 함께 넓은 의미의 생명윤리(bioethics)에 포함되는 하위 문제영역으로 규정된다. 물론 이것이 연구윤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표상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윤리가 얼마만큼 생명윤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시사해준다.

과 사회과학을 포함하여 인간의 지적 탐구활동 전반에서 연구자의 윤리적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실천윤리로 보는 것이다.

연구윤리가 선명한 학문적 틀을 가진 실천윤리로서 인식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의 철학적 토대에 관한 논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관련 출판물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다양한 사례들의 분석과 윤리적 쟁점들의 소개를 통해 연구윤리의 고유한 문제영역을 규정하려는 노력들이 압도적이다. 예컨대 기관심의위원회(IRB)의 구성과 역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절차, 부적절한 멘토링(mentoring) 관계, 지적재산권의 침해,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연구 부정행위(misconduct) 등과 관련된 윤리적·법률적 쟁점들을 나열하고, 정부나 주요 연구기관들이 채택한 정책과 관련 법률을 토대로 이 쟁점들에 대해 다분히 전략적 접근방법들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연구윤리 정책 및 규정은 그 바탕에 어떤 윤리원칙들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원칙들은 어떤 철학적 정당화를 통해 채택되고 어떤 의사결정 이론을 통해 현실 사례들에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물음들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연구윤리가 독립적 실천윤리로 확립되기 위해선, 이러한 혹은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물음들에 체계적으로 답하려는 다양한 철학적 관점의 시도들을 축적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은 왜 연구윤리 지침들은 **윤리학적** 고찰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지침들의 철학적 배경으로서 어떤 윤리학적 견해들이 가용한가를 낱낱이 살피는 작업으로 나아가겠지만, 이 논문의 현실적 논의범위는 뷰참(T. Beauchamp)과 칠드레스(J. Childress)에 의해 주창된 소위 ‘원칙주의’(principlism)에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원칙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있어서 나의 목적은 생명 의료윤리와 연구윤리가 중첩되는 문제영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온 이 견해가 생명의학 연구만이 아니라 과학연구 전반에 적용될 만한 **접근방식**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뷰참과 칠드레스가 공식화한 형태의 원칙주의를 개관하고 그것에

대한 주요 비판들과 가능한 대안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와중에 공리주의·칸트주의·덕윤리·결의론과 같이 보다 친숙한 윤리학적 견해들도 거론되겠지만, 논의의 중심은 특정한 윤리학적 견해를 옹호하기 보단 연구윤리의 철학적 토대가 가져야할 근본성격을 고찰하는 것이다.

II. 원칙들의 필요성

우리는 경험적으로 표절이나 데이터 위조 및 변조와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며 과학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행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전제들만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금하는 보편적 규범이나 원칙은 수립되지 않는다. 어떤 연구자는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부정행위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떤 공동체는 공익(公益)에 기여한다면 잘 은폐된 부정행위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은밀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⁵⁾ 연구윤리의 문제영역에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폭넓은 쟁점들을 다루고 이 쟁점들에 연관된 규정들 및 정책들의 적용을 다룬다. 그런데 이 규정들 및 정책들의 정당화에 대한 해명은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원칙들과 다시 이 원칙들이 근거하는 철학적 관점들에 대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원칙의 수립과 그 원칙의 보편성에 대한 입증은 철학자들이 늘 해오던 작업이다.

5) 예컨대 일부 국민들은 아직도 국익의 손실에만 주목하면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 부정행위의 비윤리성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익”을 우선시하는 태도와 “진실성”의 의무를 우선시하는 태도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마치 공리주의와 칸트주의의 대립처럼 간주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리주의가 공익의 관점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리주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다.

연구윤리 규정 및 정책은 보편적 윤리원칙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벨몬트 보고서』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첫머리에서 이 보고서는 기본 윤리원칙들을 우선적으로 확립할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뉴른베르크 강령』은 ... 이후의 많은 강령들의 원형이 되었다. ... 그 강령들은 연구자들이나 연구 심사자들을 안내하는, 일부는 일반적이고 일부는 구체적인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규칙들은 흔히 복잡한 상황들을 다루기에 부적당하며; 그것들은 때때로 서로 충돌하고 때때로 해석하거나 적용하기가 어렵다. 보다 광범위한 윤리원칙들은 구체적 규칙들을 처방하고 비판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자는 기존 규정이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한, 때로는 생소한 윤리적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물론 그때마다 규정과 정책의 개정이나 입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발견적 접근방식’(heuristic approach)을 취할 수도 있다. 『벨몬트 보고서』의 취지는 그러한 접근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다. 기본 윤리원칙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규칙들”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례에의 적용에서 규칙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벨몬트 보고서』는 세 원칙들을 제안한다: (1) 인간존중(respect for persons), (2) 선행(beneficence), (3) 정의(justice).⁶⁾ 이것들은 연구윤리에 대한 원칙주의적 접근방식의 유행에 크게 기여했고, 국제의학연구평의회(CIOMS)가 간행한 지침서에서도 “보편적 윤리원칙들”로서 거의 원형대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윤리지침들에서 나타나는 소위 ‘원칙들’이 모두 동일한 일반성을 가진 진술들은 아니다. 예컨대 폭넓은 국제적 지위를 인

6) ‘인간존중’ 원칙은 인간 생명의 존중이 아니라 자율성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격(人格)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간주되는 것의 존중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격존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의’ 원칙은 정의의 일반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받는 『헬싱키 선언』의 최신 개정안은 18개 항목의 ‘기본 원칙’들과 5개 항목의 ‘추가 원칙’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벨몬트 보고서』의 원칙들과 비교하면 이것들은 그 일반성의 측면에서 ‘원칙’이 아니라 ‘규칙’에 더 가깝다. 『벨몬트 보고서』는 우선 세 기본 원칙들의 의미를 설명한 다음 이 원칙들을 연구수행 과정에 적용한 결과로서 도출되는 주요 ‘요구사항’(requirement)들을 나열한다: (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피실험자의 동의, (2) 실험의 예상 이익과 위험에 대한 체계적 평가, (3) 연구 피실험자 선택의 공정성. 내용면에서의 다소간의 차이를 무시하면 『헬싱키 선언』의 기본 원칙은 『벨몬트 보고서』의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해당한다.

어쨌든 위의 사례들은 여러 국제단체나 정부의 연구윤리 관계자들이 연구윤리는 단순히 규칙들과 규정들의 모음이 아니라 보편적 윤리원칙을 근거로 연구자의 책무들을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문제라는 의식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 원칙은 어떻게 도출된 것인가? 『벨몬트 보고서』는 그 기본 원칙들이 “우리의” — 즉, 미국인의 — “문화적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문화적 전통에서는 이 원칙들의 일부나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거론했지만, 이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이 세 원칙들이 어느 문화적 전통에서든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히 보편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강령』의 경우 이러한 보편성의 가정은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강령은 인간 피실험자를 포함하는 과학실험에 대한 최초의 국제기준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지만, 오늘날에 와서 그것이 제안한 10개 항목의 기본 원칙들 중 어느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선 이 강령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명백히 비인도적인 인체실험을 자행한 범죄자들을 겨냥한 것인 까닭에 그것이 선량한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에도 적용될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⁷⁾

7) S. Perley, S.S. Fluss, and F. Simon, “The Nuremberg Code: An

그리고 다원주의자들과 상대주의자들은 이 강령이 “개인”에 대한 순전히 서양적 — 개인은 타인에 대한 고려에 의해 자신의 의사결정을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존재라는 —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함축하는 원칙은 개인에 대한 서양 고유의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서, 인격에 대해 판이한 개념을 가진 사회들과 문화들 속에서 — 특히 서로 다른 종교적 신앙에 의해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이 크게 좌우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 수행되는 온갖 연구활동들에 대해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⁸⁾ 이러한 보편성 관련 비판은 뷰참과 칠드레스의 원칙주의에 대한 주요 비판들 속에서도 등장한다.

III. 원칙주의: 도덕적 사고의 이상과 현실

‘원칙주의’는 뷰참과 칠드레스의 『생명의료윤리의 제원칙』⁹⁾에서 소개된 특정한 생명의료윤리의 방법론을 지칭한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유력한 윤리 이론들에 의해 주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한다고 가정되는 원칙들로부터 출발하여 이 원칙들로부터 다소 구체적인 규칙들을 도출하고 그 규칙들을 다시 특정한 사례들에 적용하여 도덕 판단들을 끌어내는 “하향식”(top-down) 혹은 “연역적”(deductive) 접근방식을 취한다.¹⁰⁾ 이렇게 본다면 원칙주의는 ‘응

International Overview,” in G.J. Annas and M.A. Grodin, ed., *The Nazi Doctors and the Nuremberg Code: Human Rights in Human Experimen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149-173. 이 논문에서 특히 『뉘른베르크 강령』은 치료목적의 임상연구와 건강한 피실험자에 대한 임상연구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8) S. Loue, D. Okello, and M. Kawuma, “Research bioethics in the Uganda context: A program summary,” *Journal of Law, Medicine, and Ethics* 24 (1996), pp.47-53.

9)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5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이하 PBE라고 표기함.

용윤리'의 전형이며, 하향식 접근방식은 국제단체들이나 세계 여러 정부들이 마련한 연구윤리 지침들의 일반적 서술방식이다. 『벨몬트 보고서』도 이 접근방식의 한 전형이며, 뷰참과 칠드레스는 이 보고서의 3원칙을 4원칙으로 변형시킨다: (1) 자율성존중(respect for autonomy), (2) 악행금지(non-maleficence), (3) 선행(beneficence), (4) 정의(justice).

악행금지 원칙을 제외하면, 뷰참과 칠드레스의 4원칙은 『벨몬트 보고서』의 3원칙과 외형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후자의 인간존중 원칙은 피실험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의 존중을 뜻하므로 뷰참과 칠드레스의 자율성존중 원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들의 선행 및 정의 원칙은 『벨몬트 보고서』의 그것들과 일치한다. 게다가 그들의 악행금지 및 선행 원칙은 사실 『벨몬트 보고서』의 선행 원칙을 둘로 분할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벨몬트 보고서』에 의하면 선행 원칙은 두 일반적 규칙들을 함축한다: “(1) 해악을 가하지 말라; (2) 가능한 이익을 극대화하고 가능한 해악을 최소화하라.” 이에 비해 뷰참과 칠드레스의 선행 원칙은 ‘해악을 가하지 말라’는 부정적 책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대시키라는 긍정적 책무에 해당한다. 그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형식의 규칙들, “행위의 긍정적 요구들”이다. 그리고 악행금지 원칙은 ‘~하지 말라’는 형식의 규칙들, “행위의 부정적 금지들”이다(PBE 168).

그러므로 뷰참과 칠드레스의 4원칙은 『벨몬트 보고서』의 3원칙과 거의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독창적이진 않다. 오히려 그들의 원칙주의에 대한 논란의 중심은 그들이 천명한 원칙들의 목록이 아니라 그 원칙들의 성격규정에 있다. 따라서 ‘왜 이리이러한 원칙은 포함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보다는 그 원칙들의 보편성, 현

10) PBE 385-386. “표면적”이라고 말한 것은 뷰참과 칠드레스는 자신들의 원칙주의가 엄밀히 말해서 “하향식” 접근방식과 “상향식”(bottom-up) — 특정한 행동이나 사례에 대한 판단들로부터 원칙들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 접근방식을 결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 사례에의 적용가능성, 이론적 토대의 체계성에 대한 비판들이 압도적이다. 비서구적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주의는 북미(北美) 학자들의 창작물로서 자율적 개인에 대한 서구적 관점을 강요한다. 이렇게 원칙주의의 보편성에 대해 의혹을 던지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보편성 자체를 그것의 약점으로 거론한다. 요컨대 원칙주의는 절박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의지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얇은(thin)** 이론이라는 것이다. 원칙주의는 ‘최소도덕’(minimal morality)으로서 가장 낮은 공통분모만을 제시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이 무엇에 놓여있는가?’와 같이 사람들의 의견이 심각하게 상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덮어버린다.¹¹⁾

원칙주의는 의료인이나 연구자의 자체적 규범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 그렇게 가정되는 — 원칙들로부터 특정한 사례에 대한 판단들을 도출하려 한다. 그렇기에 그것은 일반성을 획득하는 대가로 의료와 실험 현장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진다. 원칙주의의 현실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지적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원칙들을 ‘조건부’(prima facie) 의무들로 규정하는데 있다. 뷰참과 칠드레스는 로스(W.D. Ross)의 조건부 의무와 실제적(actual) 의무의 구분을 채용하면서, 자신들이 천명한 원칙들은 절대적 의무들이 아니라 조건부 의무들로서(PBE 14-15), 그 원칙들 사이의 우선권을 결정할 특정한 윤리적 관점이나 이론은 가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그것은 원칙들 혹은 의무들 사이의 충돌을 — 전형적인 예로서, 자율성의 존중과 선행의 요구의 충돌을 — 조정할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 상황에서 그 원칙들의 무게를 스스로 잘 저울질하도록 맡겨둘 뿐이다.

11) 또한 원칙주의는 규정들 및 정책들의 일치만을 겨냥하면서, “도덕의 관례화”(moral routinization)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Courtney S. Cambell, “Experience and Moral Life: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Bioethics,” in Edwin R. Dubose, Ronald P. Hamel, and Laurence J. O’Connell ed., *A Matter of Principles?: Ferment in U.S. Bioethics*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4).

비록 뷰참과 칠드레스는 원칙들을 통제하는 관점이나 이론의 부재를 원칙주의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 원칙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의 소재이다. 예컨대 클라우저(K. Danner Clouser)와 거트(Bernard Gert)는 원칙주의가 그것의 네 원칙들을 실제로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융합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¹²⁾ 이는 로스의 직관주의에 대한 전형적 비판과 같은 맥락으로서, 원칙주의가 천명한 조건부 의무들의 잠재적 충돌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뷰참과 칠드레스의 반응은 명료하다: 정합적이고 포괄적인 단일한 의사결정 절차나 윤리 이론을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다(PBE 389).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우리의 도덕적 사고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도덕적 사고의 현실은 어느 하나의 윤리적 관점이나 이론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¹³⁾ 만약 모든 윤리 이론들이 나름의 치명적 결점들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결점들을 끌어안은 채로 억지로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우리의 도덕적 사고의 모든 측면들을 설명하려하기보다는 “각 유형의 이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제거하고 적절하게 받아들일만한 것을 승인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PBE 337).

분명 공리주의는 여러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위험/이익’(risk/benefit) 분석을 통한 선명한 정책결정 방법을 제공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공평의 원리를 제공한다; 또한 그것은 연구자들은 해악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다는 도덕적 직관을 뒷받침한다. 이 강점들을 종합하면, 공리주의는 선행의 원칙을 제공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또한 분배적 공정성과 관련된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

12) K. Danner Clouser and Bernard Gert, “A Critique of Principlism,” *Th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15 (1990), pp.219-236.

13) 뷰참과 칠드레스는 “비통일성과 충돌과 애매함이 우리의 도덕적 생활에 널리 퍼져있는 특징들”이라고 생각한다(PBE 390). 이어서 그들은 이러한 도덕의 현실을 포용함이 그 도덕론의 약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은 칸트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칸트주의는 자율적 의사결정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인간존중의 의무를 제공하지만, 정언적 의무들 사이의 충돌을 해소할 기재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도덕법을 강조한 나머지 특별한 인간관계들을 과소평가한다. 이외에도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덕윤리, 결의론 등의 유력한 윤리 이론들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를 통해 뷰참과 칠드레스가 도출한 해답은 각 이론의 장점만을 원칙의 형태로 취합하는 것이다: 공리주의로부터 선행 원칙을, 칸트로부터 자율성존중 원칙을, 그리고 롤즈로부터 정의 원칙을 끌어낸다.

우리의 현실적인 도덕적 직관은 이 원칙들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단일한 윤리 이론으로 우리의 모든 도덕적 직관들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상일 뿐이다. 이와 같이 도덕적 사고의 이상과 현실을 엄밀히 구분하려는 태도는 다원주의적 결의론(pluralistic casuistry)을 주창하는 브로디(Baruch A. Brody)에게서도 발견된다: “도덕적 사고는 수많은 상이한 가치들의 균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로 다르고 때로는 상충하는 여러 원칙들 속에서 통합된다. ... 공익의 공리주의적 극대화나 칸트식으로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과 같은 단일한 가치로 모든 도덕이 환원될 순 없다.”¹⁴⁾ 원칙들이나 원칙들의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충돌은 더 심층적인 반성을 통해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브로디에 의하면 우리는 이러한 불완전성을 “도덕적 추론의 현실”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⁵⁾ 뷰참과 칠드레스 역시 원칙들의 충돌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한다: 조건부 원칙들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그것들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은 “타협·중재·협상의 여지를 남겨주며,” 그리하여 그 원칙들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

14) Baruch A. Brody, *The Ethics of Biomedical Research: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205.

15) 같은 책.

덕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게 된다(PBE 405).

IV. 객관성: 과학연구의 기본 윤리원칙

『생명의료윤리의 제원칙』의 2001년 개정판에서 뷰참과 칠드레스는 전술한 비판들에 대해 날카롭게 대응하고 있지만, 그 비판들 각각은 그렇게 쉽게 반박될 성질이 아니다. 게다가 원칙주의의 진행방식과 반대로, “실제”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원칙들에 도달하려는 — 요컨대 문제 상황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들 및 규정들의 안정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정책들 및 규정들을 뒷받침할만한 가치들과 원칙들의 균형을 발견하려는, 소위 “상향식” 혹은 “귀납적” 진행방식을 취하는 — 결의론으로부터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¹⁶⁾ 그럼에도 정책들 및 규정들의 일관성·체계성·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은 원칙주의에 대해 다분히 호의적이다. 『벨몬트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처럼, 기본 윤리원칙들의 설정은 “구체적 규칙들을 처방하고 비판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제 이 논문의 목적과 직결된 물음은 생명의학 연구를 포함한 ‘과학연구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은 무엇인가이다.

이 물음에 대한 접근에서 우리는 뷰참과 칠드레스의 4원칙을 확대 해석하여 과학연구 일반을 위한 보편적 윤리원칙들로 채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들의 4원칙은 충분히 추상적인 원칙들로서 그 적용범위가 반드시 생명의학에 국한될 이유는 없다. 예컨대 약행금지 원칙은 단순히 ‘해악을 가하지 말라’는 의무로서, ‘해

16) J.D. Arras, “Getting down to cases: The revival of casuistry in bioethics,” *Th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16 (1991), pp.29-51. J.D. Arras는 사례들로부터 원칙들을 드러내는 과정은 필시 가설적 사례들 보다는 “실제” 사례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가설적 사례들은 실천 보다는 이론에 이끌리는 형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악’(harm)을 인간의 생명·건강에 관한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죽이지 말라’나 ‘고통을 주지 말라’와 같이 언뜻 보기에도 생명과학과 직결된 규칙들을 함축한다. 그러나 ‘해악’을 금전적 피해나 명예의 훼손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악행금지 원칙은 연구자금의 방만한 운용이나 횡령이나 연구 부정행위처럼 국민세금이나 남의 자산을 낭비하여 금전적 피해를 주거나 남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하는 규칙들을 함축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뷰참과 칠드레스의 정의 원칙은 롤즈의 정의론을 건강관리(health-care)나 건강보험(health insurance)과 같은 특수한 쟁점들에 적용하여 “공정한 건강관리의 분배” 및 “최소한의 알맞은 건강관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규칙들을 제시한다(PBE 235-250). 그런데 여기서 ‘공정성’을 업적·노력·기여에 따른 분배로 해석하여 과학연구 일반에 적용한다면, 정의 원칙은 예컨대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을 — 저작권은 보고된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 확립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은 최근 문제시되는 명예저자표시(honorary authorship)나 연구계획·연구논문 심사와 관련된 관행들을 윤리적으로 평가할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뷰참과 칠드레스의 4원칙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젯거리들을 다루도록 재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재해석된 원칙들은 의미상 그들의 4원칙과 완전히 별개의 원칙들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의 4원칙뿐만 아니라 앞에서 거론한 국제단체 및 정부의 윤리지침들에서 채택된 동일한 원칙들은 모두 생명과학의 실천과 연구를 겨냥한 것들이며, 그것들이 의거하는 철학적 관점도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과학연구 일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될 때 그 원칙들의 의미는 뷰참과 칠드레스의 원칙주의에서 — 그리고 『벨몬트 보고서』와 국제의학연구평의회 윤리지침서에서 — 설명된 의미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더 중대한 걸림돌은 그들의 4원칙

은 시술대상 및 연구대상에 — 즉, 환자 및 피실험자에 — 대한 의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과학연구 일반의 기본 윤리원칙은 연구 의뢰인과 사회 및 일반대중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와 책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가능한 선택은 — 뷰참과 칠드레스의 4원칙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 연구 의뢰인과 사회 및 일반대중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와 책임을 함축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원칙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객관성’(objectivity)과 ‘공공선’(public good)의 원칙들이다. 무엇보다 이 원칙들은 법률 및 규정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과되는 타율적 의무와 책임만이 아니라, 연구자 스스로가 추구하는 — 혹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믿어온 — 가치들을 표현한다. 물론 어떤 연구자는 순전히 개인적 호기심의 만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객관성이나 공공선에 대한 기여에 무관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은 과학연구자는 최대한 객관적 결과를 산출하여 인류가 공유하는 지식의 성장에 기여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은 연구자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자율적 의무와 책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수단-목적 합리성에 비추어 객관성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연구자의 의무와 책임은 자명하다. 오늘날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과학적 지식들도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만족도 객관성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정부나 대학이나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프로젝트들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밝힘으로써 그 연구결과의 가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자크 모노(Jacques Monod)는 “객관성”이 과학자의 유일한 의무라고 말한다: 연구자의 기본 윤리원칙은 부정직과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 즉 최대한 객관성을 기하면서 의도적 편향이나 오역 없이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다.¹⁷⁾ 이렇게 정의된 객관

성 원칙이란 국내외의 연구윤리 지침들에서 강조되어왔던 ‘진실성’(integrity) 원칙과 확연히 구별되진 않는다.¹⁸⁾ 외국의 사례로서 호주 의료윤리위원회(AHEC)에서 2002년에 간행한 『임상연구안내서』도 ‘진실성’을 연구자의 기본 윤리원칙으로 제안하면서 그것을 “정직하고 윤리적인 연구수행과 연구결과의 보급 및 전달”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정의한다.¹⁹⁾ 국내의 사례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에 간행한 『연구윤리소개』는 “연구 진실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좁은 의미로는 연구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가 없는 연구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인간 또는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 연구비의 정직한 사용과 함께 연구 내용의 심사, 내부 부정행위 제보, 내부 고발자 보호, 공동 연구 윤리 등 연구자의 동료로서 지켜야 할 윤리까지 포함한다.”²⁰⁾

엄밀한 의미의 객관성 원칙은 “인식론적 객관성”(epistemic objectivity)의 요구로서 단순히 부정직하거나 편향된 연구결과의 도출과 보고를 — 가장 직접적으로는 연구 부정행위들을 — 금하는 규칙들을 함축한다.²¹⁾ 인식론적 객관성의 요구를 각별히 강조해야 할

17) Jacques Monod, *Chance and Necessity* (New York: Knopf, 1971), p.21.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앙드레 쿠르낭(Audre Frederic Cournand)은 모노의 과학기술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 복지의 증진과 “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전통”에 우선성을 주는 소위 “발전의 윤리”(ethic of development)를 제안한다. A. Cournand, “The code of the scientist and its relationship to ethics,” *Science* 198 (1977), pp.703-704.

18) ‘integrity’는 우리말로 ‘온전성’, ‘충실성’, ‘진실성’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사실 이 용어는 어떤 도덕적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용어다 — 예컨대 이 용어는 자신의 생활신조를 고집스럽게 지키려는 행동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19) The Australian Health Ethics Committees, *The Human Research Handbook* (2002), C3. 여기서 모호하다고 지적한 것은 “윤리적인 연구수행”이란 말의 의미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20)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윤리소개』, 2006.

21) Kristin Shrader-Frechette, *Ethics of Scientific Research*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4), pp.58-60. 슈레이더-프레세트는 “인식론

이유는 연구자들의 현실적 연구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작금의 과학연구는 엄청난 자금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산학협력이나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수주를 통한 자금력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분한 연구자금의 확보는 자신들의 생계 및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소속대학 내에서의 입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환경은 흔히 정부 및 기업과 연구자 사이의 종속적 관계를 강요할 수도 있다.

한 사례로 1981년 미국 MIT대학은 생명의학연구센터를 세우기로 계약을 맺고 기업가 잭 화이트헤드(Jack Whitehead)로부터 1.25억 달러를 받았다. 그 조건으로 MIT대학은 관련 특허와 재정·고용·연구주체선택에 관한 전권(全權)을 화이트헤드에게 양도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 및 정부기관이 대학의 연구자금을 좌우하면서 오늘날의 연구자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점점 상실하고 있으며, 자신의 연구의 학술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객관성이나 공공선에 대한 기여를 숙고(熟考)하기보다는 수익성·특허권·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연구비 제공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할 — 심지어 조작할 — 동기와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험난한 환경에서 연구자는 어떻게 객관성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당연히 객관성 원칙을 따름은 — ‘자기복제’와 같이 아직 미확정된 쟁점도 있겠지만 —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남의 글을 표절하거나 데이터의 위조·변조와 같은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들은 성공지상주의적인 비윤리적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객관성 원칙은 대체로 ‘~하지 말라’는 식의 부정적 요구들을 함축한다. 이 요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보편적

적”(epistemic) 객관성과 “윤리적”(ethical) 객관성을 구분한다. 전자가 단순히 거짓이 없는 연구수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연구결과의 “편향되지 않은”(unbiased) 사용을 도모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윤리원칙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받아들여질 요구들이며, 딱히 엄밀한 철학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비해 보다 넓은 의미의 — 연구윤리 관계자들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성질의 — 객관성 원칙은 연구결과의 오용이나 악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긍정적 요구를 함축하는 원칙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과학연구 결과는 국가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편성하거나 그 연구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결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문화적·정서적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은 신중하지 못한 연구결과의 발표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넓은 의미의 객관성 원칙은 항상 이러한 영향력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축할 수 있다.

V. 공공선: 상충하는 의무들을 조정하는 원칙

순수과학에서조차 완벽하게 객관적인 — 혹은 가치판단이 철저히 배제된 — 연구란 가능하지 않다. 예컨대 연구자들은 미지의 성분이나 변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어떤 통계적 시험을 사용할 것인가, 샘플의 크기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이론이나 모델을 채택할 것인가, 어떤 현상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가 모종의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한 근거인가에 대해 추론을 시도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부정확하거나 객관성을 손상시키는 주관적 가치판단이 항상 끼어들 여지가 있다. 일정한 추론방법이나 데이터나 전제를 채용할 때마다 연구자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들을 특정한 사례에 적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과 적용은 방법론적 가치판단의

형태를 취한다. 상이한 방법론적 가치판단들은 상이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가지지만 결국 어느 정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관적 가치판단의 불가피성이 객관성 원칙을 따를 의무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연구자는 보다 신뢰할만한 방법론적 가치판단을 채택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더 나아가 자신이 채택한 방법론적 가치판단과 연구결과의 불확실성과 변수들을 명시할 의무를 가진다. 이 후자의 의무는 단순한 ‘인식론적 객관성’ 확보의 의무를 초월하여 자신의 연구결과의 사회적 여파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윤리적 객관성’의 의무를 가리킨다. 가령 성차(性差)와 관련된 통계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그 연구결과가 자칫 성차별적 사회인식이나 고정관념을 조장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연구결과가 오용되거나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결과의 추론에 사용된 방법론적 가치판단과 불확실성과 편차 등을 소상히 밝힐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성 원칙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선에 기여할 의무와 연결된다.

연구자는 자신이 한 시민으로서 갖는 공통적인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자신의 지적인 역량을 통해 남다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연구자들의 입장에선 부당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과학자나 공학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이나 이익을 줄 수 있는 남다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과연 그들이 특별한 책임을 짐을 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덴슨(R. Ladenson)은 그러한 책임의 주장은 “한편으로 해악을 야기함과 다른 한편으로 해악을 방지하거나 선을 증진함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²²⁾ 요컨대 어느 도덕적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과학자

22) Robert F. Ladenson,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engineers and scientists: a philosophical approach,” in R. Baum and A. Flores, ed. *Ethical Problems and Engineering*, 2nd edition, Vol. 1 (Troy, NY:

나 공학자도 단지 의도적으로 해악을 야기하지 않을 책임만을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에 대한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그의 유명한 공리주의 비판에서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는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은 해악이나 도모하지 않은 선에 대한 책임을 — 그의 용어로 “부정적 책임”(negative responsibility)을 — 강하게 거부했지만, 우리의 상식도덕과 합리성은 그러한 책임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²³⁾ 다소 극단적이지만 라텐슨의 논리대로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조차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책임과 다른 특별한 책임이 없는 셈이다.

모든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동등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평등’ 개념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마치 대통령의 특별한 사회적 책임이 남다른 사회적 역할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구자들의 특별한 사회적 책임은 그들의 남다른 사회적 역할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단적”(collective) — 혹은 연대적 —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²⁴⁾ 이는 최근 사회문제화 된 연구 부정행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예컨대 ‘표절’이나 ‘데이터 위조·변조’와 같은 부정행위들이 학계의 관행으로 굳어진 데에는 그러한 부정행위를 범한 개별 연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인한 대다수의 연구자들도 동등한 책임이 있다. 이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의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을 비롯하여 연구윤리의 문제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 프로젝트

Human Dimensions Center, 1980), pp.241-242.

23) J.J.C. Smart & Bernard Williams, *Utilitarianism: For and Again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pp.93-100. 버나드 윌리엄스의 주장에 의하면, 공리주의는 어떤 도덕적 행위자가 의도적 행위뿐만 아니라 무위(無爲)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데, 이러한 책임 개념은 행위와 결과의 인과적(causal) 연쇄에 주목하는 결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다.

24) Kristin Shrader-Frechette, *Ethics of Scientific Research*, p.64.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한 각 연구자의 책임의 정도는 다르며 그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여전히 과학연구자들은 전문인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의 사회적 책임은 집단적 성격을 가진다.

트들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조직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황우석 박사의 사례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고, 사실 그 부정행위 자체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묵인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인다.

이제 연구자 집단의 특별한 사회적 책임들 가운데 몇몇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보자. 그것들 중 하나는 정보와 지식을 독점함에 의해 야기되는 해악을 방지할 의무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뷰참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다는 이유로, 혹은 정보의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연구비 제공자와의 약속 때문에 대중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하여 지극히 중대한 사실을 포함하는 연구결과를 전달하지 못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또한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특히 그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 연구자나 기관이나 연구비 제공자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일 때, 연구를 졸속하게 중단하는 것도 용인할 수 없다. ...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 자신의 연구결과가 내적 혹은 외적인 영향력에 의해 감추어지거나 부적절하게 편집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²⁵⁾

인식론적 객관성의 의무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연구자는 여전히 의무들의 상충을 경험할 수 있다. 전형적인 사례로서 연구 의뢰인에 대한 ‘기밀유지’(confidentiality)의 의무는 연구결과에 잠재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할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뷰참의 글의 요지는 연구 의뢰인에 대한 기밀유지의 의무는 가능한 사회적 해악이 발견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능한 사회적 해악’이란 좁은 의미로 공익의 직접적 훼손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공익을 증진하는 —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 정보와 지식의 독점이나 은폐에 의한 해악까지도 포함한다.

25) Tom Beauchamp, “Ethical Issues in Funding and Monitoring University Research,” *Business and Professional Ethics Journal* 11, no. 1 (1992), pp.5-16.

이러한 주장은 연구 의뢰인에 대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의무충돌의 상황에서 공공선이 기밀유지의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공공선의 우선성을 적용할만한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는 내부자 고발의 사례이다. 내부자 고발은 특수한 불복종의 사례로서, 연구 의뢰인이나 연구자 공동체에 대한 충성보다 더 높은 윤리원칙에 복종하려는 행동이다. 대부분의 전문직 윤리강령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같은 직종 종사자들 사이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연구자들에게 한 편으로 의뢰인에 대한 책임 있는 연구수행과 — 혹은 계약이행과 — 상호협력 체제를 통한 보다 능률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연구자들이 의뢰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집단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할 빌미를 제공한다. 어떤 사회적 압력 하에서도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주고 연구자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일종의 미덕으로 생각되어왔다. 나의 주장은 이것들이 더 이상 미덕도 의무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조건부 의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익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선, 이 의무들은 공공선의 원칙에 의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각각의 전문직은 오랜 역사를 통해 관행들과 덕목들과 행동강령들의 형태로 나름의 내부적 규범들을 마련해왔다. 이 규범들 중의 일부는 도덕적 숙고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일부는 단순히 그 전문직의 내부질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편의상의 규칙들이거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후자의 규범들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생활과 직업 활동에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까닭에 종종 그들에게 더 근본적 의무들이 있음을 망각하게 만든다. 공공선에 기여할 의무는 그러한 근본적 의무들 가운데 으뜸이며, 의무들의 상충을 조정하는 최상위의 원칙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선의 원칙을 최상위의 원칙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공익’ 혹은 ‘공공선’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리주의를 연상시키겠지만, 나는 이 개념들을 직접(direct) 공리주의보다는 간접(indirect) 공리주의적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공공선의 원칙이 작용하는 것은 대체로 연구자들이 심각한 의무들의 상충을 경험할 때이며, 그러한 상충이 없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윤리원칙들이나 의무들이나 덕목들의 적용을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나는 ‘공공선’이란 개념을 공리주의자들이 사용하는 — 혹은 공리주의자들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가정되는 —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칸트적 의무론자나 자유주의적 권리론자도 기꺼이 받아들일만한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선’(善)이란 건강이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식의 확대나 인격의 존엄성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공정한 분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칸트주의자들이 역설할 것처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대우받는 것도 한 인간의 선이며, 자유주의적 권리론자들이 역설하는 분배적 평등도 한 인간의 선이다.²⁶⁾

공공선의 원칙을 강조하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해하려는 의도는 원칙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 즉 상충하는 원칙들을 조정하는 관점이나 이론의 부재에 대한 비판을 회피할 방법을 모색해보려는 것이다. 도덕적 사고의 이상과 현실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뷰참과 칠드레스는 우리는 결국 원칙들의 상충을 조정하기 위해 어떠한 더 높은 원칙에도 의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나는 그들의 주장이 우리의 도덕적 사고의 현실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윤리적 관점이나 이론이 반드시 도덕적 사고의 현실

26) 예컨대 스캔론(T.M. Scanlon)은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평등을 ‘선’이라는 개념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T.M. Scanlon, “Rights, Goals, and Fairness,” Samuel Scheffler ed.,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74-92; originally published in Stuart Hampshire ed., *Public and Private Mor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p.93-111.

만을 반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덕적 사고의 어떤 수준에서든 일정한 원칙들을 설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결의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뷰참과 칠드레스의 4원칙도 전혀 우리의 도덕적 사고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도덕적 이상을 세운다는 것이며, 모든 원칙들의 상충을 조정하는 최상위의 원칙으로서 공공선의 원칙을 세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공공선’이란 단순히 공리주의적 맥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뷰참과 칠드레스의 4원칙을 모두 포용할 만큼 광범위한 내연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선의 원칙을 세움은 공리주의든 칸트주의든 연구자의 모든 의무들을 어떤 단일한 윤리적 관점이나 이론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VI. 결론: 결의론과 덕윤리에 대한 소견

원칙주의는 많은 비판들을 받아왔으며 몇몇은 실로 난감한 것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칙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비판은 원칙들은 여전히 현실 “사례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클라우저와 거트가 지적하듯이 원칙들 자체는 문제에 직면한 도덕적 행위자에게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뷰참과 칠드레스의 4원칙이든 객관성과 공공선의 원칙이든, 그것들로부터 구체적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도덕 판단들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예컨대 내부 고발자는 자신의 불복종 행위를 통해 시정될 상황과 그 결과의 크기를 다른 잠재적 결과들의 크기와 — 예컨대 일반국민들의 과학자에 대한 불신풍조의 조장이나 해당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단과 같은 결과들과 — 신중하게 비교해야할 수도 있는데, 공공선의 원칙조차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그 고발자에게 명확한 행동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의론은 원칙주의의 이

러한 맹점을 파고든다.

결의론은 사례중심의 윤리적 분석체계를 가리킨다. 궁극적으로 원칙들을 도출하려하면서도, 결의론은 그 원칙들이 사례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사실적 주변상황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결의론은 필연적으로 다원칙적(多原則的)인 형태를 가진다. 왜냐하면 “사례와 그것의 적절한 해결책에 대한 궁극적 견해는 어떤 단일한 원칙이나 어떤 지배적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사실들과 논증들에 의해 수립된 인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²⁷⁾

브로디는 특히 가설적 사례보다는 실제적 사례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것들을 결의론의 지지근거로서 활용한다. 그에 의하면 연구윤리 공식정책들은 역사적으로 발생한 실제 사례들과 현상들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이렇게 출현한 공식정책들이 우리의 연구윤리의 현주소이다. 오늘날의 연구윤리 공식정책들은 나치(Nazi)에 의한 인체실험이나 터스키기(Tuskegee) 매독연구처럼 일련의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들의 폭로, 유전공학 및 유전자치료와 같은 획기적 신기술을 포함한 연구들의 출현, 그리고 여성 및 소수자의 실험참여에 관련된 부정의나 동물권리에 대한 사회적 운동들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최근 연구윤리가 각종 부정행위들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브로디의 주장에 따르면, 연구윤리에 대한 여러 국제적 공식정책들은 광범위한 쟁점들에 대해 놀라운 정도의 합치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합치는 어떤 지배적 윤리원칙이나 가치체계나 도덕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례중심의 추론을 통해 세워진 것이다. 물론 결의론은 정책들의 도덕적 정당화의 기반으로서 원칙을 발견하려 하지만, 그 원칙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수정가능하다: “다원주의를 받아들임은 정당한 가치들이 특정한 사례에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받아들임을 뜻한다. ... 결의론을 받아들임은 우리가 더 많은 사

27) Albert R. Jonsen, “Casuistry: An alternative or complement to principles?”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5 (1995), p.245.

례들을 반성함에 따라 우리의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필요를 받아들임을 뜻한다.”²⁸⁾

이러한 결의론에 대한 전형적 비판은 그것은 도덕적 의사결정을 위한 순수하게 방법론적인 접근방식일 뿐 도덕적 내용을 결여한다는 것이다. 뷰참과 칠드레스가 지적하듯이 그것은 “도덕적 사고에서 사례비교와 유추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사고도구이지만, 최초의 도덕적 전제들을 결여한다”(PBE 395). 이러한 내용의 결여의 지적에 대응하여 결의론자는 공식정책들과 쟁점사안들에 대한 국제적 반응들 사이의 광범위한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합치를 강조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합치는 그저 환영에 불과할 수도 있다.²⁹⁾ 브로디는 더 많은 사례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 검토를 통해 공식정책들에 대한 도덕적 합치의 영역은 계속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의 관찰들을 신뢰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예컨대 치료목적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선도국가들의 정책에서처럼, 갖가지 쟁점사안들에 대한 여러 정부나 연구기관의 정책들 및 규정들 사이에는 많은 합의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브로디의 추측은 지나친 낙관이며, 그러한 합의점들의 도출 자체가 어떤 윤리원칙이 아니라 사례분석에 의존한다는 주장도 일방적이다.

현재와 미래의 더 많은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 검토는 오히려 의견 불일치의 영역을 넓힐 가능성이 상존(常存)하며 현재 합치된 영역에서조차 이견(異見)들을 양산할 수 있다. 사실 브로디가 강조하는 정책들 및 규정들의 합치는 불과 2~30년 사이에 두드러진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게다가 국가 정책상의 합의나 연구자들끼리 만들어낸 규정들을 진정한 도덕적 합의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도 설부른 판단이다. 결의론은 어떤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도덕적 합의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치적·개인적 목적의 우연

28) Brody, *The Ethics of Biomedical Research: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206-207.

29) 같은 책, p.209.

한 일치인지를 말해줄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도덕적 합의의 결과라고 주장하려면 결의론은 은연중에 그 당사자들이 어떤 기본 윤리원칙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며 결국 어떤 단계에서든 원칙주의에 의지하게 된다. 나는 실제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우리의 도덕적 상상력의 확장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의 도덕적 사고가 항상 사례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연구윤리에 대한 철학적 접근방식으로서 원칙주의가 결의론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최근까지 국내의 연구윤리 관계자들은 연구 부정행위와 같은 문제들이 연구자의 ‘성품’이나 ‘심성’과 직결된다는 착상에서 덕 윤리적 접근방식을 취해왔다. 예컨대 ‘정직성’과 같은 덕목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성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연구윤리 규정들 및 정책들을 뒷받침할만한 윤리적 관점이나 이론인가를 물을 수 있다. 다른 모든 직업 활동과 마찬가지로 과학연구의 수행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 까닭에, 예컨대 법을 준수하라, 정직하라, 동료들 존중하라, 공익을 증진하라는 식의 공통된 덕목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덕윤리는 심각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공하기에는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된다. 아직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정행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논쟁은 흔히 적절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가르는 안정적 ‘결정점’(cut-point)의 발견에 귀착된다. 그런데 덕윤리 자체는 이러한 안정적 결정점을 발견할 수단을 포함하지 않는다.

덕목에 따른 올바른 행위는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그리고 덕목들의 상대적 무게들도 가변적이다. 어떤 시대에는 법의 준수보다 공익의 증진이 우선시되기도 하고, 어느 문화에서는 동료의 존중이 정직성보다 우선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덕윤리로부터 도출된 규범들과 행동강령들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지적되듯이 덕윤리는 덕목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 그것들을

중재할 수단을 결여한다. 예컨대 정직성의 덕목과 공익증진의 덕목이 충돌하여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연구자에게 도덕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분명 일관성 있는 규정들의 마련만큼 중요한 것은 그 규정들을 따르도록 연구자의 심성을 훈련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덕윤리가 연구윤리 규정들 및 정책들의 수립에서 다른 윤리 이론이나 방법론과 경쟁하기보다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자 교육의 측면에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뉘른베르크 강령』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nihtraining.com/ohsrsite/guidelines/nuremberg.html>.

『벨몬트 보고서』 인터넷 웹사이트

<http://ohsr.od.nih.gov/guidelines/belmont.html>.

『헬싱키 선언』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wma.net/e/policy/b3.htm>.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윤리소개』, 2006.

Albert R. Jonsen. “Casuistry: An alternative or complement to principles?”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5 (1995): 273-251.

Andre F. Cournand. “The code of the scientist and its relationship to ethics.” *Science* 198 (1977): 699-705.

Baruch A. Brody. *The Ethics of Biomedical Research: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Courtney S. Cambell, “Experience and Moral Life: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Bioethics,” in Edwin R. Dubose, Ronald P. Hamel, and Laurence J. O’Connell ed. *A*

- Matter of Principles?: Ferment in U.S. Bioethics*.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4.
- J.D. Arras. "Getting down to cases: The revival of casuistry in bioethics." *Th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16 (1991): 29-51.
- Jacques Monod. *Chance and Necessity*. New York: Knopf, 1971.
- J.J.C. Smart & Bernard Williams. *Utilitarianism: For and Again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K. Danner Clouser and Bernard Gert. "A Critique of Principlism." *Th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15 (1990): 219-236
- Kristin Shrader-Frechette. *Ethics of Scientific Research*.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4.
- Robert F. Ladenson.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engineers and scientists: a philosophical approach." In R. Baum and A. Flores, ed. *Ethical Problems and Engineering*. 2nd edition. Vol. 1. Troy, NY: Human Dimensions Center, 1980.
- S. Loue, D. Okello, and M. Kawuma, "Research bioethics in the Uganda context: A program summary." *Journal of Law, Medicine, and Ethics* 24 (1996): 47-53.
- S. Perley, S.S. Fluss, and F. Simon, "The Nuremberg Code: An International Overview." In G.J. Annas and M.A. Grodin, ed. *The Nazi Doctors and the Nuremberg Code: Human Rights in Human Experimen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149-173.
- Søren Holm and Bryn Williams-Jones. "Global bioethics - myth or reality." *BMC Medical Ethics* (2006): 7:10.
- The Australian Health Ethics Committees, *The Human Research Handbook* (2002).
- 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

(CIOMS).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2002).

T.M. Scanlon. "Rights, Goals, and Fairness." In Samuel Scheffler ed.,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Originally published in Stuart Hampshire ed., *Public and Private Mor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93-111.

Tom Beauchamp. "Ethical Issues in Funding and Monitoring University Research." *Business and Professional Ethics Journal* 11, (1992): pp 5-16.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5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ABSTRACT**An Ethical Examination of Research Ethics Guidelines**

Kang, Joon-Ho

In order for Research Ethics to grow into an independent area of practical ethics,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philosophical analyses of the ethical principles that underlie the current research ethics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at the same time to experiment diverse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research-related ethical issues. As part of that effort, I attempt in this pap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the so-called “principlism,” which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 have proposed as a philosophical approach to biomedical ethics, may also be appropriately applied to research ethics in general. The four principles (respect for autonomy, non-maleficence, beneficence, and justice) suggested by them, aiming primarily at biomedical practices and researches, put stress on the heteronomous obligations of physicians and researchers to their patients and human subjects. For that reason, these principles seem inadequate to explain the researchers’ autonomous obligations to clients such as companies and governments as well as to society and the public. So I suggest principles of “objectivity” and “common good” as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for scientific research in general, and try to give an outline of what these principles demand researchers to do with reference to a few typical problems in research ethics. I also argue that although many criticisms have been made on it and

indeed some of them are irrefutably serious, principlism as a philosophical approach to research ethics is relatively superior to other approaches, such as casuistry and virtue ethics.

Keywords: Research Ethics, Principlism, Common Good, Objectivity, Beauchamp, Utilitarianism, Casuistry